「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: 2026년 9월 14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9월 14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세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산세 경감기간 및 경감률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간 및 경감률 변경(안 제7조)

- (기존)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
- (개정)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

100분의 50 경감하고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간 및 경감률을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서 정비하려는 것임.

❍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의2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❍ 개정안에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상한과 동일한 경감률을 정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바, 입법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